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교육부장관

유 은 혜

●대통령령 제30879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7조제1항 본문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출석하거나”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1.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사건의 관할 이송에 관한 사항
- 2.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등 의결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혐의자, 징계등 의결 요구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 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 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 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을 “혐의 당시 직급, 징계등 요구의 내용,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5조에 따른 고려사항

제24조 전단 중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를 “제10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10조의2, 제11조부터”로, “제20조까지”를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범죄 등 사건이 속한 회의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성비 구성이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 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하여는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징계등 의결 요구자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등 의결이 요구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징계위원회의 징계등 사건 의결 시 고려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징계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서식]

확인서

1.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협의 당시)	(현재) (협의 당시)	(한글) (한자)		
2. 비위유형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라. 학생 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마. 성폭력·성희롱 등 성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바.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사. 학생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아.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자.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차.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카. 성비위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타. 「공직선거법」상 관련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위무 위반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거. 소극행정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너. 부정청탁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대상금액(원, 배) 형사처벌 및 번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 상 비위 해 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input type="checkbox"/>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행실	* 징계 횟수, 주의·경고 횟수, 직무수행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정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권자(직위)**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일반징계위원회의 회의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7월 28일

국무총리 정 세 군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정 경 두

●**대통령령 제30880호**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군인사법」 제56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군인사법」 제10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당해 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59조”를 “법 제5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